

『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5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13일

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산업국장 지영목

나. 제안이유

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-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 및 제7조)
-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은,
 - 구미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,
 -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, 우리 시에는 '23년 3월 기준 39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,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.
 -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